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되어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1.11.(수)까지 우리 처(축산물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백종헌의원 (19144)	○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제28조의2 관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함 -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판매금액 → 판매금액의 2배 이하)	'22.12.27.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중앙부처(법령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시·도 축산물 관련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관련 단체, 본부(56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주무관 **남경우** 사무관 **김충현**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전결 2022. 12. 29. **김철희**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9596 (2022. 12. 2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축산물안전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247 팩스번호 043-719-3270 / nkw98@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